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46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한지아·진종오·김승수

백종헌 · 김기현 · 김예지

김 건 · 김재섭 · 정성국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의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2항부터 제4

항까지 및 제19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전단 중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를 "유족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살시도자등"을 "당사자"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자살시도자 등의"를 "자살시도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시도자등"을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 다)"으로, "자살시도자 등에게"를 "자살시도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서의 장과"를 "경찰관서의 장, 해양 경찰관서의 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찰관서의 장" 을 "경찰관서의 장,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을 ""긴급구조기관""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 등에"를 "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제출 등에"로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 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19조의5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장으로부터 자살유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및 차단 등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 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 요청
 - 3. 자살유발정보 작성자에 대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
 - 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모니터링센터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모니터링센터의 장은 자살유발정보 작성자에 대해 필요시 긴급 구조기관에는 긴급구조를,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는 수사 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니터링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2 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	
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	유족에
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	
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	
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u>자살시</u>	<u>당사자</u>
<u>도자등</u>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u>자살시도자 등의</u> 사후	제12조의2(<u>자살시도자등의</u> 사후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관리) ①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상 <u>자살시도자등</u> 을 알게 된 경	<u>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u>
우 그 <u>자살시도자 등에게</u> 관할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u>자살시도자등에게</u>
다.	<u>.</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u>경찰관서의 장과</u> 소방관서	② 경찰관서의 장, 해양경찰관

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 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⑧ (생 략)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 로 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 방관서의 장(이하 <u>이 조에서</u>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

<u>서의 장 및</u>
1. ~ 3. (현행과 같음)
3
그 기 이 시 시
경찰관서의 장, 해양경찰관
<u>서의 장</u>
④ ∼ ⑧ (현행과 같음)
세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
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u>"긴급구조</u>
기관"

명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 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 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 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 다.

1. ~ 3. (생 략)

② ~ ⑨ (생 략)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의 의무) ① (생 략) <신 설>

<신 설>

 ,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⑨ (현행과 같음)

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u>절차 등에</u> 대해서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기관에 긴급구조 신고 등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19조의 5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 링센터의 장으로부터 자살유발 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및 차단 등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u>⑤</u> -----<u>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u> 제출 등에-----

-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 링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 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 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 요<u>청</u>
 - 3. 자살유발정보 작성자에 대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

- 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 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 ② 모니터링센터의 장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 가 유통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 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게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등 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 조하여야 한다.
- ③ 모니터링센터의 장은 자살 유발정보 작성자에 대해 필요 시 긴급구조기관에는 긴급구조 를,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는 수사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니터링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 중희망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5 그 밖에 모니터링센터의 설 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u>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u> <u>다.</u>